

## 9 지방소득세 분야

개정 전	개정 후
<p>&lt;①조합법인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§167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(특례내용) 당기순이익 과세 저율세율 적용 ※ 국세(법인세) 체계와 동일</li> <li>○ (일몰기한) <u>2025.12.31.</u>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☞ 현행 3년 연장</li> <li>○ (특례내용) 당기순이익 과세 저율세율 적용 ※ 국세(법인세) 체계와 동일</li> <li>○ (일몰기한) <u>2028.12.31.</u></li> </ul>
<p>&lt;②개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 조문 정비 §167의3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납부서 발송 인용조문 (「지방세법」 제95조제4항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☞ 인용조문 변경 반영</li> <li>○ 납부서 발송 인용조문 (「지방세법」 제95조제5항)</li> </ul>
<p>&lt;③인구감소지역 주민 고용 시 법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 신설 §167의5&gt;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☞ 인구감소지역 주민 고용 촉진을 위한 법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 신설</li> <li>○ 인구감소지역 주민 고용 시 1인당 45만원(중소 70만원) 세액공제 규정 신설</li> </ul>
<p>&lt;④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신설 §167의6&gt;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☞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과세특례 신설</li> <li>○ 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시 개인지방소득세에도 적용되도록 규정 신설</li> </ul>

### < 개정내용 >

- (①) 조합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대해 현행 3년 연장
- (②) 납부서 발송 근거조항이 개정된 사항 반영(지방세법 §95④ → §95⑤)하여 정비
- (③) 인구감소지역 일자리를 확대하고 해당 지역 주민을 우선 고용하도록 기업이 인구감소지역 주민 고용 시 1인당 45만원(중소 70만원) 법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 규정 신설
- (④) 국세(소득세)와의 형평을 고려하여, 고배당기업 주식 배당 소득에 대해 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시 개인지방소득세도 과세 특례가 적용되도록 규정 신설